

SK 에코플랜트 주식회사 지배구조 헌장

2021. 5. 27.



전 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고, 회사는 영구히 존속·발전하기 위해 구성원 행복과 함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

회사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책임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상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회사의 각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이사회는 회사 업무집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주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결정하고, 이사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구성원들의 직무 집행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각 이사는 법령과 정관 등 회사 내부 규정 및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구성원들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회사는 위와 같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제 1 장 주주

제 1 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 3 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장 이사회

제 4 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회사의 중요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나아가 회사의 전략 수립과 가치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가치창출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정관이나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 5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회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출생국가, 문화적 배경 등 다양성 지표를 토대로 이사회내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 ②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④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3명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이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 조 [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내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둔다.
-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유지·보관한다.
-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⑤ 이사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 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은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1. ESG 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 및 평가/보상기능을 하는 위원회
 3. 감사위원회
- ③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한다.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사는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안건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관련 임직원을 참석하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 ⑤ 회사는 이사들의 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제 8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이사의 책임]

-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

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10 조 [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회사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무를 진다. 이사회 의장은 위와 같은 의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외부에 자료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운영한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12 조 [ESG 위원회 및 선임사외이사]

- ① 회사는 주주가치 및 권익의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의 확립을 위해 사외이사 전원을 포함하여 구성된 'ESG 위원회'를 운영한다.
- ②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회사는 사외이사를 대표

할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를 두며, ESG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사외이사가 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2.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3.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 또는 위원회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업무

제 13 조 [인사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사후보의 관리,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적절한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기능을 하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14 조 [주주소통위원]

회사는 필요시 회사의 주주, 잠재적 투자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주주소통위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감사기구

제 15 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중 1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적법성 검사,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의 사후보고 등을 수행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 담당 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제 16 조 [외부감사인]

-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해관계자

제 17 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지역사회의 발전, 협력사 동반성장, 장애인 고용 확대,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정책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 ③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④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 ⑤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8 조 [이해관계자의 참여]

- ① 회사는 근로자와의 협력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제 5 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 19 조 [공시]

-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 ⑤ 회사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한다.
- ⑥ 회사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CFO)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게시한다.

제 20 조 [기업 경영권 시장]

-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에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 ③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21.3.26.)

(시행일) 이 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7.)

(시행일) 이 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1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